

일본에 사죄와 배상을 요구한다.

— 강제 종군위안부 문제의 해결방안—

발제자 : 이 호 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아세아. 태평양전쟁이 끝나고 우리민족이 식민지 지배에서 해방된지 4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일본은 이제 아세아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여 국제적 평화유지군으로서 일본군대를 해외에 다시 파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유엔(국가연방)의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차지하려는 세계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남북여성이 초대되어 과거 식민지 지배하에서 일본군부에 의해 강요된 성적 노예의 피해자들의 피맺힌 증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주장하는 한국여성으로서 본인은 참으로 착잡하고 괴로운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21세기를 향해 새로운 평화시대를 갈구하는 우리로서 한반도와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과 진정한 우호와 협력관계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군사정권이 우리민족과 여성들에게 저지른 만행과 범죄에 대한 책임이 규명되지 않고 올바르게 청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문제를 망각하며 역사속에 그대로 묻쳐 버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 두 민족사이에는 심각한 장벽과 간격이 영원히 가로놓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이 문제에 대한 사죄와 청산없이 국제적 평화유지군을 해외에 파견하며 강대국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아세아 전지역 여성들에게는 제국주의 침략의 악몽을 되살리며 불안한 위협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진정으로 인권과 평화와 정의를 존중하는 민주국가로 신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만행이 앞으로의 한일관계에서나 세계사에서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이 만행과 범죄에 대한 사실을 밝혀 우리 자녀세대에 교육시켜야 하겠기에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올바른 청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1. 종군위안부 문제의 본질

종군위안부문제의 핵심은 “일본군과 정부가 정책적으로 조선의 부녀자를 강제로 연행하여 성노예로 삼은것”입니다. 이는 10만에서 20만으로 추정되는 조선의 부녀자

들에게 행하여진 개인적 및 집단강간행위일 뿐 아니라 여성의 재생산기능을 파괴함으로써 민족말살을 기도한 범죄입니다. 이것을 제노사이드(genocide)라고 하며 이러한 범죄방지와 처벌을 위한 국제협약 제2조는 제노사이드를 “어떤 극적, 인종, 종족, 또는 종교집단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파멸시키려는 의도아래 저질러지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행동들은 (a) 그 집단의 구성원을 살해하는 행위 (b) 그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심각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 (c)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신체적 파괴를 야기할 면밀한 계산아래 그 집단의 생존의 조건을 해치는 행위 (d) 그 집단내에 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부과하는 행위 (e) 그 집단의 어린이를 다른 집단으로 강제로 이전하는 행위등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종군위안부 강제동원은 (b)(c)(d)에 각각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종군위안부 문제는 역사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점령군에 의한 부녀자의 우발적 강간이 아니라 군대 최고통수지휘부에서 기획, 입안하여 시행된 것으로서 식민지에서 장거리 전선까지 조선부녀자를 강제연행하여 군부대와 함께 이동하면서 여성을 성노예화시킨 장기적, 조직적, 국가적 제도로써 인류전쟁사에 있어서 전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범죄행위인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강조하고 싶은 점은 강제연행의 국제관습법적 의미입니다. 국제관습법에 따르면 『사기, 폭행, 협박, 권력남용, 기타 일체의 강제수단에 의한 동원』을 강제연행이라고 파악합니다. 따라서 모든 종군위안부는 거짓 직업알선에 속아서 간 경우까지 포함하여 강제연행되어 성노예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생존자들의 부끄러움을 무릅쓴 증언을 통해서, 그리고 일본내에서 양심적 인사들이 발굴한 자료와 증거들을 통해서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2.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의 태도는 여전히 그 책임을 축소 조정하려는 데 머물고 있습니다. 전면부정에서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나오면 그때마다 조금씩 인정해가는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1990년 6월 6일 일본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모도오카 쇼지의원이 군대위안부의 조사를 정부측에 요청했을때 “군대위안부는 군, 국가와 관계가 없고 민간업자가 한 일”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요시미 요시아끼교수가 일본군이 위안소 설치모집을 감독

통제하였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문서를 제시한 후 1992년 1월 13일에 이르러서야 군의 관여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동안 일본정부는 사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어떤 진실한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정부의 입장은 크게 세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군, 정부의 관여는 인정하되 군이 직접 기획하고 정책적으로 집행했다는 점을 분명히 시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시에 10만 - 20만의 여성이 군대를 따라 군차량으로 이동하고 숙소를 배치받고 식량을 공급받으며 군대의 감시하에서 성노예 생활을 한 사실을 놓고도 정책적 집행을 부정합니다. 둘째는 강제연행에 대해서도 인간사냥이 입증된 개인들의 부분사례로서 인정하려 합니다. 세번째는 일본정부의 부분적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한 배상문제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해결되었으므로 '보상에 대신하는 조처'로서 종군위안부들의 생계지원을 하겠다는 시혜적 태도입니다.

1965년 한.일협정으로 배상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관점은 크게 두가지 점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한.일협정을 체결할 때는 이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본정부는 당시 종군위안부의 존재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일협정으로 배상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한.일협정에서 한국정부가 일본점령기간중에 생긴 모든 청구권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국제법상으로는 국가가 개인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근본규범(유스 코겐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군위안부들의 배상청구권은 한.일협정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없으며 일본은 범죄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3. 최근 한국정부의 입장

한국정부는 이와 같은 일본정부의 입장에 대해 우선 일본정부의 성실한 진상규명 노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로서 전체적인 진상이 먼저 밝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군위안부의 생계지원은 한국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종군위안부의 생계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금번 4월 임시국회에서 제정하여 시행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일본이 고려하는 '보상에 대신하는 조처'로서 종군위안부의 생계를 지원하겠다는 방식을 한국정부가 거부하는 것이며, 일체의 물질적 보상을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일본정부의 진상규명 의무를 보다 강하게 요구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민간차원의 배상요구는 유효한 것임을 인정하고 일본정부 상대의 소송과 유엔 인권위원회에서의 논의 등 민간차원의 활동은 지원을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정부의 입장중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은 일본의 전쟁범죄, 비인간적 범죄가 사실로 입증되는데도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묻지 않을것인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점입니다. 명백히 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정부의 입장에는 65년 한.일협정에 종군위안부문제가 포함되었다는 해석이 전제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제법 위반 여부의 검토를 통해 위와 같은 입장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4. 본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종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기본입장

정대협의 종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내용은 진상규명, 범죄자처벌, 그리고 사죄및 배상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진상규명의 수준은 종군위안부 정책결정의 과정, 집행체계, 책임소재, 모집방식, 운영방식, 지역적 배치및 수적인 전체규모, 패전후 종군위안부 귀환조치 여부등 종군위안부 문제의 전모에 대한 조사입니다. 우리로서는 일본정부의 성실한 태도만 있다면 이 모든자료를 체계적, 계획적으로 밝힐 수 있다고 봅니다. 일본내 증인도 생존해 있을 것이고 이와 관련된 모든 자료가 일본내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실한 진상규명의 노력은 일본정부의 차원에서 보다 전문민간단체나 연구자들에게 위임하거나 관민합동의 조사가 객관성과 신빙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진정한 사죄와 뉘우침은 진상규명이 이루어진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책임자를 밝히고 적절한 처벌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미 인도네시아 점령지에서 화란 여성들에게 저지른 전쟁범죄에 대한 재판에서 일본군부 책임자들에 대해 처벌한 전례가 있습니다. 아세아 여성들에 대한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국과 피해당사자에게 사죄하고 배상해야 합니다. 배상은 범죄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인 것입니다. 일본의 배상책임은 국제법적 책임이기도 합니다. 종군위안부 문제는 국제법상 비인도적 범죄행위에 속하는 바, 비인도적 범죄행위란 살인, 인종말살, 노예화, 추방, 그리고 전쟁중과 전쟁전을 불문한 민간인에게 저질러진 여러 비인도적 행위를 의미하며 국내법에 의해서 그 처벌이 제한받지도 않습니다. 종군위안부는 "노예화"이고 "추방"이며 민족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인종말살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따라서 국제법상의 비인도적 범죄행위이므로 시효(時效)의 적용도 없게 되고 이른바 보편적 관할권이 인정되어 피해국인 한국을 포함하여 세계 모든나라가 처벌권을 가지게 되며 일본은 바야흐로 천하의 공범이 되고 맙니다.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배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배상문제를 접근하는 기본원칙은 UN 인권위원회 특별보고자 반 보벤(van Boven)교수가 적절히 지적한 대로 희생자들의 필요와 요구, 즉 피해자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상의 형태는 화폐적 배상과 비화폐적 배상을 포함합니다. 화폐적 배상은 현금, 또는 건강의료지원, 고용, 주택, 교육, 토지등을 포함하며 비화폐적 배상

- 은 1) 진실을 충분히 공적으로 규명하고 사실들을 확증할 것
2) 범해진 침해의 책임을 공적으로 인정할 것
3) 책임자로 판명된 사람들을 재판할 것
4) 희생자와 그들의 친척, 친구, 증언자들을 보호할 것
5) 기념물을 건립하고 희생자에게 경의를 표할 것
6) 희생자들의 사후복지를 위한 기관을 설립하고 희생자를 돕기 위한 인원을 양성할 것

등을 포함합니다. 정대협은 위와 같은 배상이 생존자는 물론 희생당한 전체 종군위안부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종군위안부 정책을 행한 일본의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청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문제의 해결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의 양심적 인사들과 시민집단과 연대를 하면서 함께 자료를 발굴하고 증언자를 찾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면서 한.일관계의 새로운 정립과 아시아의 진정한 평화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종군위안부문제 해결이 종결되지 않는한 일본은 그 책임과 부담을 아세아에서 뿐만 아니라 전체인류사회에 대해 지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구 유고슬라비아 내의 보스니아 지역 여성들이 군부에 의해 당한 집단강간사태가 국제적으로 규탄당하고 있으며 세계 어느 곳에서라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과거 일본의 범죄가 거론될 것이며 일본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지속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계평화를 위한 일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과거청산을 분명하게 해야 할 시점입니다.